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02)720-2015

/ 전송 737-0109

문서번호 국행일33000-83

시행일자 '95. 7. 4. (5)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선 결			지 시		
접	일 시 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처 리 과			결 재 · 공 람		
담 당 자			결 재 · 공 람		

제목 산업기능요원 확대에 관한 지시 (국무총리 지시 제1995- 14 호)

최근 우리경제는 각부분에 있어서 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제조업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역 임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산업기능요원 확대방안」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관련부처장관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부 : 산업기능요원 확대방안 1부. 끄

국무총리

수신처 : 가(11, 23, 27, 31, 45, 47)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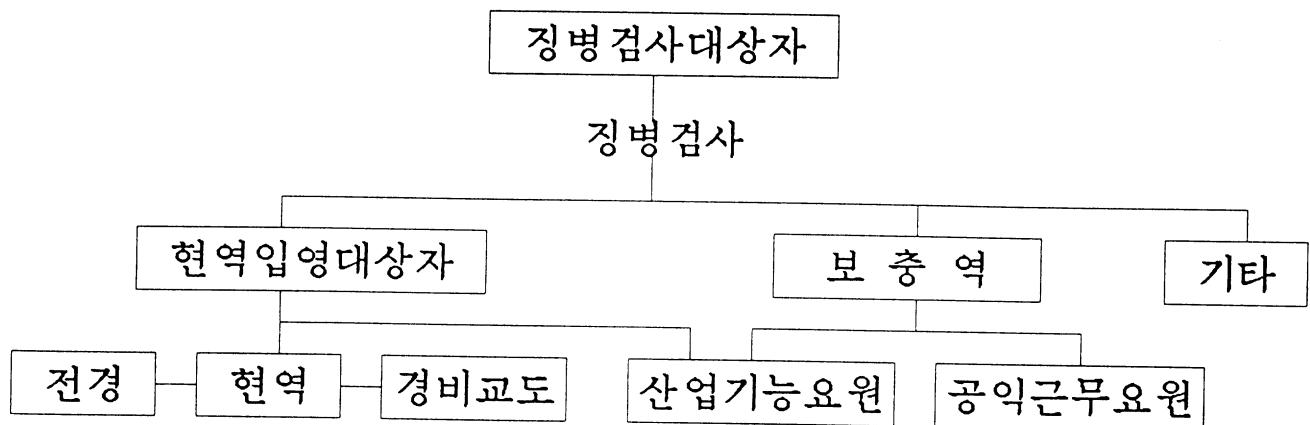
產業技能要員 擴大方案

'95. 6.

國務總理 行政調整室

1. 概 要

□ 兵役資源 配分體系



□ 兵役特例制度 主要內容

구 분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상	보충역중에서 소집	현역 또는 보충역중 기술자격 구비자 지원
복무분야	하천.산림감시, 과적차량 단속, 교통질서 계도 등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 방위산업체 등 지정분야
복무기간	28개월(18개월)	36개월
보 수	현역 상당 봉급 및 수당	월평균 70만원 이상

□ 兵役 剩餘資源 配分

- 95년 처음 도입된 公益勤務要員으로 25천명 배정
 - 산림감시 13천명, 교통질서계도 5천명, 상수원 보호 2천명
우편분류 2천명, 취정수장 보호 1천명, 과적차량 단속등 2천명
- 産業技能要員으로 每年 35천명 수준 배정
 - 채용실적 : 92년 11천명(현역 6천, 보충역 5천), 93년 19천명
(현역 13천, 보충역 6천), 94년 26천명(현역22천, 보충역 4천)
※ 現役入營 대상자중 現役所要를 제외한 나머지를 産業技能要員
으로 配定

2. 産業技能要員 制度 및 運營上의 問題點

□ 志願 資格制限 (병역법 시행령 제79조, 제84조)

- 産業技能要員이 되기 위해서는 학력별 技術資格 必要

- 대졸자 : 기사 2급
- 전문대학 이상 자 : 기능사 2급
- 고졸이하자 : 기능사보

* 技術資格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1년이내 職業訓練 및 資格取得後 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가능

□ 製造業分野 從事忌避

- 職業觀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분야 선호

- 勤勞環境 및 作業條件이 열악하여 就業忌避

- 就業對象 業體中 많은 數가 地方中小企業 및 3D업종

□ 産業技能要員制度에 대한 弘報 미흡

- 産業技能要員 制度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지원율 저조

- 調查結果, 制度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지정업체 현황, 支援節次와 就業時의 報酬 등 구체적인 事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企業의 採用努力 不足

- 一部企業의 경우 配定된 人員 未採用

- 보충역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부재

- . 학력, 신체상태 등에서 보충역보다 우수한 현역 선호

3. 産業技能要員 擴大方案

□ 公益勤務要員 等의 規模 減縮調整

- 公益勤務要員 配定 數를 95년 25천명에서 96년도에는 9千名으로 縮小 ⇒ 總規模를 15천-20千名 水準 維持
 - * 95.5월말 現在 今年度 配定人員 25천명중 12천명이 소집 되었는 바, 나머지 13千名에 대해 産業技能要員 志願機會 부여
- EXPO 경비 등을 위한 限時人力(4천명) 감축으로 전경규모를 58千名에서 54千名으로 減縮

□ 補充役의 産業技能要員 編入 要件 緩和 (兵役法 施行令 改正)

- 資格을 緩和하여 學歷에 關係없이 技能士補 資格으로 單一化
 - 大卒 : 기사2급, 專門大卒 : 기능사 2급, 高卒以下 기능사보 ⇒ 기능사보로 통일
- 資格을 具備하지 못한 補充役의 産業技能要員 編入을 위한 職業訓練 期間 延長 (現行 1년 → 2년)

□ 指定業體間 採用競爭 誘導

- 指定業體 數를 최대한 擴大하여 業體 相互間의 경쟁 유도
 - 現行 5,753개 → 8,000개 水準
- 業體로 하여금 현역 출신 採用者 數의 50% 이상을 補充役中에서 採用토록 권장하고 實績이 우수한 업체 人員配定 擴大
 - 採用實績이 不振한 業體는 業體指定取消 및 配定人員 縮小

- 産業技能要員 制度에 대한 積極的인 弘報對策 講究
 - 身檢場에서 補充役으로 判定 받은 者들이 同 制度를 알 수 있도록 事前 案內 教育 強化 및 弘報 油印物 配布
 - 이미 補充役으로 判定받은 者들을 對象으로 안내서 郵送 - 志願節次 지정업체에 대한 地域別, 業種別 現況, 配定人員, 報酬, 기숙사 具備與否 등에 대한 情報提供
 - 高等學校, 專門大學 재학생에 대한 制度 案內教育 實施
- #### 4. 措置事項
- 關係法令 改正 (95. 6-7월중)
 - 兵役法 施行令(제79조 별표, 제84조)
- 兵役資源 配分調整 및 指定業體 擴大 (3/4분기)
 - 關係部處 協議 및 兵務審議委員會의 審議 등을 통해 公益勤務要員, 産業技能要員 規模 調整
- 産業技能要員에 대한 弘報 強化
 - 兵務廳, 通產部, 公報處 등의 協議를 통해 弘報方案 樹立 (95. 3/4분기)
- 補充役 採用勸獎, 産業技能要員에 대한 處遇 改善 등 지정업체에 대한 行政지도 강화
 - 通產部가 施行方案을 마련 추진 (95.3/4분기)